

의안번호	제 381호
의결연월일	2017. 7. 20

-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7. 13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7. 14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7. 20

제232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실장 : 류 승 순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17. 8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,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하고자 예산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예산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

나. 대상기관

기관명	주소	운영방식	최초위탁일	당초 위탁기간
예산 공립어린이집	예산읍 교남길 40	민간 위탁	2008. 7. 12	2014. 9. 1 ~ 2017. 8. 31

다. 위탁기간 : 2017. 9. 1 ~ 2022. 8. 31 (5년간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- 이 동의안은 예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**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